

의안번호	2212638
의 퇴 인	이종배의원
회 답 일	2025.10.23.
추계번호	25B479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3조제3항 신설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¹⁾ 본문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역의 지질·기후 등 환경적 특수성과 지하개발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제3항 신설)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근거규정
1	안 제23조제3항 신설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1)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①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고,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지하시설물 공사(이하 "긴급복구공사"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현행법상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지질·기후 등 환경적 특수성과 지하개발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지하개발사업이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이 되는 경우 평가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런데 개정안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로 지정될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와 해당 사업의 건수 등을 현시점에 특정하기 곤란하여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 집계 기준으로, 2024년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447건의 건당 평균 대행비용은 5,811만원(건당)으로 나타남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